

제2290호

고양시보

2026년 7월 9일 (목)

차 례

입 법 예 고

고양시 공고 제2026-1640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고양시 공고 제2026-1642호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
고양시 공고 제2026-1643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2
고양시 공고 제2026-1644호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2
고양시 공고 제2026-1646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3
고양시 공고 제2026-1647호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7

고양시 공고 제2026 - 1640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안전관리 및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기준을 정비하고,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과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기준을 정비함(안 제2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기준 명확화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는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근거 반영

나.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의2).

다.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을 정비함(안 제26조의3 및 별표 23).

-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 및 세부사항을 별표로 통합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을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근무경력 1개월마다 0.02점 부여하도록 개선(최대 0.72점)
 - 민원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경력 가산점 신설
 - 근무경력 가산점의 중복 제한 및 총점 상한 기준 마련
- 라.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34조).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2026년 7월 29일까지
-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인적자원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인적자원과 인사팀 031-8075-2387
 - 팩 스: 031-8075-489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규칙 제 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 중 “격무·기피”를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로, “공무원”을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등) ① 영 제32조제2항제5호, 제33조의2제4항제3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상시 수행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1.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② 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제11호가목에서 정한 민원업무수당을 받으면서 격무업무로 선정된 업무를 말한다.

제26조의3(중전의 제26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3(근무경력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기준, 가산점 등 세부내용은 별표 23과 같다. 이 경우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

간으로 한다

제27조 중 “별표 23”을 “별표 25”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고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응시자의 제출서류
2.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
3. 제15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4. 제16조에 따른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5. 제17조에 따른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

별표 23을 별표 25로 하고,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4의 제목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제26조의3 관련)”을 “실적가산점 부여기준(제26조의4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3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산점에 대한 특례) 별표 23 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의 전문직위(전문관) 근무경력 가산점에 대해서는 내부 전문직위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조(재난 및 안전관리 근무경력 가산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별표 23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인적자원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인적자원과장 박 영 산
	팀 장 성 명	인사팀장 강 병 중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박 유 진 (031-8075-2387)

[별표 23]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제26조의3 관련)

1. 계획 인사교류 근무경력

부여 기준	가산점	비 고
중앙부처 및 경기도 인사교류 근무경력 (1년 이상 교류 근무한 경우 적용)	- 1년 이상 교류 시, 최초 교류 임용일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0.1점	최대 2.4점

2. 전문직위(전문관) 근무경력

부여 기준	가산점	비 고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 3년 초과 4년 이하: 1개월마다 0.1점 - 4년 초과 5년 이하: 1개월마다 0.12점 - 5년 초과: 1개월마다 0.15점	최대 3점

3.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부여 기준	가산점	비 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이 제2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계급의 변동 없이 상시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경우	- 근무경력 1개월 마다 0.02점	최대 0.72점

4. 민원 업무 근무경력

부여 기준	가산점	비 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이 제26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의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상시적으로 근무한 경우	- 근무경력 1개월 마다 0.02점	최대 0.72점

<비고>

-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 동일한 기간 내 동일한 직무수행에 따라 근무경력 가산점이 중복으로 부여되는 경우는 가장 높은 한 가지 가산점만 적용한다.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의 총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격무·기피</u>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u>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u> -----. <u>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 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26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등) ① 영 제32조제2항제5호, 제33조의2제4항제3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u>

현행	개정안
	무”란 상시 수행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1.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② 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란 「지방공무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u>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제11호가목에서 정한 민원 업무수당을 받으면서 격무업무로 선정된 업무를 말한다.</u> 제26조의3(근무경력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기준, 가산점 등 세부내용은 별표 23과 같다. 이 경우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11.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③ 제2항의 가산점은 총 0.7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고, 가산점 평정 기간은 영 제31조의6 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제26조의3 (생략)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	제26조의4 (현행과 같음)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 ----- -----

현행	개정안
은 <u>별표 23</u>과 같다. <u><신 설></u>	-- <u>별표 25</u>-----. <u>제34조(규제의 재검토) 고양시장</u> <u>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u> <u>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u> <u>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u> <u>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u> <u>해야 한다.</u> 1. <u>제5조에 따른 응시자의 제</u> <u>출서류</u> 2. <u>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u> 3. <u>제15조에 따른 경력경쟁임</u> <u>용시험등의 응시자격</u> 4. <u>제16조에 따른 특수직급 시</u> <u>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u> <u>및 신체조건</u> 5. <u>제17조에 따른 특수 직무분</u> <u>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u> <u>경력경쟁임용</u>

현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23]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제26조의3 관련) 1. 계획 인사교류 근무경력 <table><tr><th>부여 기준</th><th>가산점</th><th>비 고</th></tr><tr><td>중앙부처 및 경기도 인사교류 근무경력 (1년 이상 교류 근무한 경우 적용)</td><td>- 1년 이상 교류 시, 최초 교류 임용일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0.1점</td><td>최대 2.4점</td></tr></table> 2. 전문직위(전문관) 근무경력 <table><tr><th>부여 기준</th><th>가산점</th><th>비 고</th></tr><tr><td>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td><td>- 3년 초과 4년 이하: 1개월마다 0.1점 - 4년 초과 5년 이하: 1개월마다 0.12점 - 5년 초과: 1개월마다 0.15점</td><td>최대 3점</td></tr></table> 3.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table><tr><th>부여 기준</th><th>가산점</th><th>비 고</th></tr><tr><td>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이 제26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계급의 변동 없이 상시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경우</td><td>- 근무경력 1개월 마다 0.02점</td><td>최대 0.72점</td></tr></table> 4. 민원 업무 근무경력 <table><tr><th>부여 기준</th><th>가산점</th><th>비 고</th></tr><tr><td>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이 제26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업무의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상시적으로 근무한 경우</td><td>- 근무경력 1개월 마다 0.02점</td><td>최대 0.72점</td></tr></table> <비고> -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 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 동일한 기간 내 동일한 직무수행에 따라 근무경력 가산점이 중복으로 부여되는 경우는 가장 높은 한 가지 가산점만 적용한다.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의 총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5] (현행과 같음) [별표 24] 실적가산점 부여기준(제26조의4 관련) (이하 현행과 같음)	부여 기준	가산점	비 고	중앙부처 및 경기도 인사교류 근무경력 (1년 이상 교류 근무한 경우 적용)	- 1년 이상 교류 시, 최초 교류 임용일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0.1점	최대 2.4점	부여 기준	가산점	비 고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 3년 초과 4년 이하: 1개월마다 0.1점 - 4년 초과 5년 이하: 1개월마다 0.12점 - 5년 초과: 1개월마다 0.15점	최대 3점	부여 기준	가산점	비 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이 제26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계급의 변동 없이 상시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경우	- 근무경력 1개월 마다 0.02점	최대 0.72점	부여 기준	가산점	비 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이 제26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업무의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상시적으로 근무한 경우	- 근무경력 1개월 마다 0.02점	최대 0.72점
부여 기준	가산점	비 고																							
중앙부처 및 경기도 인사교류 근무경력 (1년 이상 교류 근무한 경우 적용)	- 1년 이상 교류 시, 최초 교류 임용일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0.1점	최대 2.4점																							
부여 기준	가산점	비 고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 3년 초과 4년 이하: 1개월마다 0.1점 - 4년 초과 5년 이하: 1개월마다 0.12점 - 5년 초과: 1개월마다 0.15점	최대 3점																							
부여 기준	가산점	비 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이 제26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계급의 변동 없이 상시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경우	- 근무경력 1개월 마다 0.02점	최대 0.72점																							
부여 기준	가산점	비 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이 제26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업무의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상시적으로 근무한 경우	- 근무경력 1개월 마다 0.02점	최대 0.72점																							

고양시 공고 제2026 - 1642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한강 공원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시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용신청 기한을 단축하고,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한강공원”의 용어 정의가 한강공원 내 공원이용시설의 정의와 중복됨에 따라 “한강공원”의 정의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 나. 한강 공원이용시설 사용신청 기한을 단축하고, 사용승인 취소 사유를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다. 한강공원 주차요금의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주차요금을 적용함(안 제13조 및 별표 1).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조정함(안 별표 2).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2026년 7월 29일까지
-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생태하천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63, 한강방문자센터 2층(행주외동)
 - 전 화: 생태하천과 한강관리팀 031-8075-2753
 - 팩 스: 031-8075-492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하천법」 제92조에 따라”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로서”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가하천(한강)”을 “관리하는 한강수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용하는”을 “사용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용하려는 자”를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로, “14일”을 “30일 전부터 7일”로, “미리 승인을 받아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원이용시설 사용일 60일”을 “사용일 30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공원이용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를 “신청자”로, “부여하여 승인”을 “부여”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게 사용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11조 제목 중 “사용제한”을 “사용승인의 제한·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이용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승인된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제10조제5항의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시장은 과거에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3일”을 “5일”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을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을”로, “이용할”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을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1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료를”을 “공원이용시설 사용을 취소하여 사용료를”으로, “반환 받으려는 자는”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

날까지”로, “신청서를”을 “신청서를 작성하여”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제7조”를 “제6조 또는 제7조”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납부한 사용료”를 “납부금액”으로, “계좌입금통장”을 “반환계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생태하천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생태하천과장 김 주 영
	팀 장 성 명	한강관리팀장 임 상 기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우 성 현 (031-8075-2753)

[별표 1]

공원이용시설 사용료(제12조 및 제13조 관련)

1. 공통사항

시설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2. 개별사항

1) 체육시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주차장

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별표 1의 고양시 도시공원(호수공원 등)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준용한다.

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3) 휴양시설

사용목적	사용기준	사용료
야영	1박/사이트당	1만5천원
잔디밭 사용	50명 이상, 독점모임 행사 시	30원/㎡/2시간

○ 야영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기준

가. 1박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하며, 야영장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나. 시설 1개소의 사용인원(3세부터 적용)이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당 3천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 야영을 목적으로 사전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4) 시민편익시설

사용목적	사용기준	사용료
무대 사용 (야외, 데크)	(주간) 08:00 ~ 18:00	8만원/회
	(야간) 18:00 ~ 다음 날 08:00 ※ 소음유발활동은 야간 사용불가	16만원/회

5) 그 밖의 사항

사용목적	사용기준	사용료
영상촬영	(주간) 08:00 ~ 18:00	13만원/회
	(야간) 18:00 ~ 다음 날 08:00	26만원/회
참가비용 수반행사	참가비용을 수반하는 모든 상업적 행사 (마라톤, 콘서트, 그 밖의 문화활동 등)	참가비용 수익의 10퍼센트

○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을 준용한다.

3. 사용료 반환 규정

반환 사유	반환 기준		비고
	취소 시기	반환 금액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료의 50퍼센트	
	사용 당일	반환 불가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해 사용승인 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승인 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

해당 조항	금지 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호	정당한 사유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10만원		
제2호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만원		
제3호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거나 과격한 활동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을 주는 행위	5만원		
제4호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만 한한다)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5만원		
제5호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행위	5만원		
제6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주차장을 포함한다)에 야영 또는 취사를 하는 행위	10만원		
제7호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꽂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만원		
제8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만원		
제9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만원		
제10호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만원		
제11호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만원		
제12호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포획하는 행위	10만원		
제13호	공원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5만원		
제14호	그 밖의 「하천법」 제46조에서 정의하는 금지 행위(6호 및 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함)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한강공원”이란 「하천법」 제 92조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가하천(한강) 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2. (생 략) 3. “사용료”란 공원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 ----- 관리하는 한강수계 ----- -----. 2. (현행과 같음) 3. ----- 사 용하는 ----- -----.
제10조(사용신청) ① 공원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일 14일 전까지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에는 공원이용시설 사용일 6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생 략) ④ 시장은 공원이용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에게 한강공원의 관리	제10조(사용신청) ① ----- --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 30일 전 부터 7일 ----- 제출 해야 ----. ② ----- ----- ----- 사용일 30일 ----- 제출해야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게 사용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신청자----- -----

현행	개정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제한) ① (생략) 1. ~ 3. (생략) 4. 제10조제4항의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생략) <신설> ② 시장은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사유로 승인을 취소한 이력이 있는 경우, 승인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 부여-----. 제11조(사용승인의 제한·취소)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이용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승인된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제10조제5항의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시장은 과거에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징수 등) ① (생략) ② 사용자는 사용승인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승인 받은 공원이용시설	제12조(사용료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5일 -----,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을-----

현행

개정안

[별표 1]

공원이용시설 사용료(제12조 및 제13조 관련)

1. 공통사항

시설별 사용요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2. 개별사항

1) 체육시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주차시설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5분당)		1일 주차권	월 정기권	
2시간까지	2시간초과		주간	야간
80원	150원	-	-	

○ 운영시간: 09:00 ~ 22:00, 무료회차 시간 10분

3) 휴양시설

사용목적	사용기준	사용료
야영	1박/사이트당	1만5천원
잔디밭 이용	50명 이상, 독점모임 행사 시	30원/㎡/2시간

○ 야영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기준

가. 1박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하며, 야영장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나. 시설 1개소의 이용인원(3세부터 적용)이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당 3천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별표 1]

공원이용시설 사용료(제12조 및 제13조 관련)

1. 공통사항

시설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2. 개별사항

1) 체육시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주차장

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별표 1의 고양시 도시공원(호수공원 등)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준용한다.

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3) 휴양시설

사용목적	사용기준	사용료
야영	1박/사이트당	1만5천원
잔디밭 사용	50명 이상, 독점모임 행사 시	30원/㎡/2시간

○ 야영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기준

가. 1박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하며, 야영장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나. 시설 1개소의 사용인원(3세부터 적용)이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당 3천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현행

다. 야영을 목적으로 사전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4) 시민편익시설

사용목적	사용기준	사용료
무대사용 (야외, 데크)	(주간) 08:00 ~ 18:00	8만원/회
	(야간) 18:00 ~ 다음 날 08:00 ※ 소음유발활동은 야간 사용불가	16만원/회

5) 그 밖의 사항

사용목적	사용기준	사용료
영상촬영	(주간) 08:00 ~ 18:00	13만원/회
	(야간) 18:00 ~ 다음 날 08:00	26만원/회
참가비용 수반행사	참가비용을 수반하는 모든 상업적 행사 (마라톤, 콘서트, 그 밖의 문화활동 등)	참가비용 수익의 10퍼센트

○ <신 설>

3. 사용료 반환 규정

반환사유	반환 기준		비고
	취소 시기	반환 금액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	사용료 전액	
	사용예정일 1일 전	사용료의 50%	
	사용 당일	환불불가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해 사용 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사용료 전액		

개정안

다. 야영을 목적으로 사전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4) 시민편익시설

사용목적	사용기준	사용료
무대 사용 (야외, 데크)	(주간) 08:00 ~ 18:00	8만원/회
	(야간) 18:00 ~ 다음 날 08:00 ※ 소음유발활동은 야간 사용불가	16만원/회

5) 그 밖의 사항

사용목적	사용기준	사용료
영상촬영	(주간) 08:00 ~ 18:00	13만원/회
	(야간) 18:00 ~ 다음 날 08:00	26만원/회
참가비용 수반행사	참가비용을 수반하는 모든 상업적 행사 (마라톤, 콘서트, 그 밖의 문화활동 등)	참가비용 수익의 10퍼센트

○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을 준용한다.

3. 사용료 반환 규정

반환 사유	반환 기준		비고
	취소 시기	반환 금액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료의 50퍼센트	
	사용 당일	반환 불가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해 사용승인 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승인 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		

현행

개정안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

해당 조항	금지 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호	정당한 사유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10만원	<u>15만원</u>	<u>20만원</u>
제2호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만원	<u>7만원</u>	<u>10만원</u>
제3호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거나 과격한 활동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을 주는 행위	5만원	<u>7만원</u>	<u>10만원</u>
제4호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만 한한다)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5만원	<u>7만원</u>	<u>10만원</u>
제5호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행위	<u>20만원</u>	<u>30만원</u>	<u>50만원</u>
제6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주차장을 포함한다)에 야영 또는 취사를 하는 행위. 단, 제10조 규정에 의해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만원	<u>15만원</u>	<u>20만원</u>
제7호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꽂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u>5만원</u>	<u>7만원</u>	<u>10만원</u>
제8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만원	<u>7만원</u>	<u>10만원</u>
제9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만원	<u>7만원</u>	<u>10만원</u>
제10호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만원	<u>15만원</u>	<u>20만원</u>
제11호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만원	<u>7만원</u>	<u>10만원</u>
제12호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포획하는 행위	10만원	<u>15만원</u>	<u>20만원</u>
제13호	공원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5만원	<u>7만원</u>	<u>10만원</u>
제14호	그 밖의 「하천법」 제46조에서 정의하는 금지 행위(6호 및 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함)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

해당 조항	금지 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호	정당한 사유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10만원		
제2호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만원		
제3호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거나 과격한 활동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을 주는 행위	5만원		
제4호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만 한한다)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5만원		
제5호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행위	<u>5만원</u>		
제6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주차장을 포함한다)에 야영 또는 취사를 하는 행위. 단, 제10조 규정에 의해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만원		
제7호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꽂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u>3만원</u>		
제8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만원		
제9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만원		
제10호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만원		
제11호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만원		
제12호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포획하는 행위	10만원		
제13호	공원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5만원		
제14호	그 밖의 「하천법」 제46조에서 정의하는 금지 행위(6호 및 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함)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현행

[별지 제2호서식]

공원이용시설 사용 취소(사용료 반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자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사용시설	명칭		
	위치		
납부한 사용료	금 (₩ 원정 원정)	사용기간	
반환금액	금 (₩ 원정 원정)		
계좌입금 통장	거래은행		예금주명
반환신청 사유	계좌번호		

위와 같이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원이용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결재

→

반납

신청인

처리기관: 고양시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공원이용시설 사용 취소(사용료 반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자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사용시설	명칭		
	위치		
납부금액	금 (₩ 원정 원정)	사용기간	
반환금액	금 (₩ 원정 원정)		
반환계좌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반환신청 사유			

위와 같이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원이용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결재

→

반납

신청인

처리기관: 고양시

고양시 공고 제2026 - 1643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용어에 맞추어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로 변경함(안 제25조,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
- 나. 제10조에 따른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주기적인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 의무를 규정함(안 제30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7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덕양구도서관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77번길 8, 화정도서관(화정동)

- 전 화: 덕양구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 031-8075-9012

- 팩 스: 031-8075-489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규칙 제 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공 석
	팀 장 성 명	도서관정책팀장 이 진 희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박 소 윤 (031-8075-9012)

[별지 제11호서식]

고양시 ○○도서관 운영·관리 위탁신청서			
신 청 인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주소		
위 탁 기 간	. . .부터 . . .까지(년간)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관리 위탁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위탁신청) (생략) 1. 정관(규약) 및 <u>법인등기부등본</u>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 3. (생략) <u><신설></u>	제25조(위탁신청) (현행과 같음) 1. ----- <u>법인등기사항증명서</u> ----- 2. ~ 3. (현행과 같음)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10 <u>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6</u> <u>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u> <u>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u> <u>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u> <u>다.</u>

현행				개정안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고양시 ○○도서관 운영·관리 위탁신청서				고양시 ○○도서관 운영·관리 위탁신청서			
신청인				신청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주소				주소		
위탁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위탁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관리 위탁을 <u>받고자</u>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관리 위탁을 <u>받기 위하여</u>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규약) 및 <u>법인등기부등본</u>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첨부서류	1. 정관(규약) 및 <u>법인등기사항증명서</u>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2. 사업계획서 1부		없음		2. 사업계획서 1부		없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현행				개정안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고양시 ○○도서관 운영·관리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고양시 ○○도서관 운영·관리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				신청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주소				주소		
위탁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위탁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 운영·관리 위탁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 운영·관리 위탁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첨부서류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2. 사업계획서 1부		없음		2. 사업계획서 1부		없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			

고양시 공고 제2026 - 1644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적인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제명 및 인용 조문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제11조 및 제12조).
- 나. 통합지원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제3항).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7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복지정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031-8075-3466

- 팩 스: 031-8075-491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쇠”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통합지원 회의”를 “통합지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기관”을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고양시 본청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고양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제3항 중 “재적 의원”을 “재적위원”으로, “개의회”를 “개의회(開議)”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복지정책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복지정책과장 성 윤 진
	팀 장 성 명	통합돌봄팀장 이 상 목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조 은 비 (031-8075-3466)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노쇠</u> ,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양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통합지원 대상자”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장애인복지법</u>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 <u>장애인복지법</u> 」 -----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생략)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 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 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 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 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 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⑤ (생략)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9조(통합지원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	제9조(통합지원회의) ① ----- ----- <u>각 호</u> -- ----- <u>통합지</u>

현행	개정안
<u>원회의</u>를 운영한다. 1. ~ 3. (생략)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u>관련기관</u>,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고양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신설> 제11조(전담조직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시 본청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고	<u>원회의</u>-----.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 <u>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u>----- ----- ----- ----- ----- ----- ----- ---. ③ <u>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 제11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고양시 본청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행	개정안
<u>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u>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u>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u> 2. <u>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u> 3. <u>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u> 4. <u>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제14조(협의체의 회의) ①·② (생략) ③ 협의체의 회의는 <u>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u>하고, <u>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u>	③ <u>통합지원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u>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고양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14조(협의체의 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재적위원</u> ----- <u>개의(開議)</u>----- <u>출석위원</u> -----

현행	개정안
한다.	-----.

고양시 공고 제2026-1646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및 조정기한을 단축하고 분쟁조정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피신청인의 신청정보를 간소화 하도록 정비하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는 청소 관련 종사자의 근무(휴게)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공동주택의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 대상 중 ‘1994년도 4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청소 관련 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와 공동주택의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 나. 기존에는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사항을 조정하였으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쟁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을 확대함(안 제15조제1항).
- 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을 상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분쟁조정안을 작성·통보하도록 조정기한을 단축함(안 제24조제1항).
- 라.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정비함(안 별표).
- 마. 분쟁조정 신청 시 지자체가 확인 가능한 정보는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신청 정보를 간소화함(안 별지 제4호서식).
-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2026년 7월 29일까지
-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주택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031-8075-3120
 - 팩 스: 031-8075-493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비용”을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일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중 “이하인”을 “이하이거나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3. 경비원 및 청소 관련 종사자의 근무(휴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 등에 드는 비용
4. 공동주택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공사 등에 드는 비용

제6조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개의회”를 “개의회(開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위원은”을 “위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1. 주택업무 담당 실장·국장 및 부서장

- ⑦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심사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담당 팀장”을 “업무 담당”으로, “소관 업무별 실무 팀장”을 “관련 분야 업무 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요 사업비”를 “사업비”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소요되는”을 “걸리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심사위원회에 부의할”을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위해”를 “위해(危害)”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을 “심의·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8조제3항 중 “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소요되는”을 각각 “드는”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심의·조정하거나 조정신청을 상정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주 택 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주 택 과 장 이 성 실
	팀 장 성 명	공동주택관리팀장 김 태 성 공동주택감사팀장 이 상 원
	담 당 자 성명·연락처	최 지 영 (031-8075-3120) 임 지 환 (031-8075-3168)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3천만원	
	1000세대 이상	4천만원	

2. 우수관·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수관·오수관 제외)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1천만원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1천만원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2천만원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 지원	1000세대 미만	2천만원	
	1000세대 이상	3천만원	

6.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1천5백만원	
	1000세대 이상	2천만원	

7.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2천만원	

8.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대상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 고
전용면적 60㎡ 이하	90%	세대당 60만원 이하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2조제16호의 노후주택 중 같은 조례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80%		
전용면적 130㎡ 이하	30%		

9. 공동주택의 변압기 교체에 드는 비용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1천5백만원	
	1000세대 이상	2천만원	

10. 저수조의 유지·보수 및 교체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4천만원	
	1000세대 이상	5천만원	

11. 옥외 지상주차장의 증설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3천만원	
	1000세대 이상	4천만원	

12.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20% 지원	1억5천만원(1대당, 1천만원)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후 시설의 교체·보수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4천만원	

14.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지원대상	최대 지원금액	비 고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세대당 700원 이하 및 현장지원수수료 440,000원 이하	다른 보조금과 중복지원 가능

15.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지원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지원항목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1천5백만원	공용부 보수·교체 공사 또는 공동체 활성화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2000세대 미만	2천만원	
	3000세대 미만	2천5백만원	

16. 경비원 및 청소 관련 종사자의 근무(휴게)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70% 지원	1천5백만원	

17. 공동주택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2천5백만원	

<비고>

1. 보조금 지원금액은 별표의 범위에서 고양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조금 지원금액은 시 지원율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지원금액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금액의 5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3. 보조금은 공사비 등의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의 최대 지원금액은 공사종류별 합계액으로 한다.
5. 제8호에 대한 지원 단지에 전용면적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 세대수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제17호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설비를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u>비용</u>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일부</u>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 지원) ① ----- ----- ----- ----- <u>비용</u>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 <u>일부</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생략)	제4조(지원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공동주택의 변압기 교체에 <u>소요되는 비용</u>	9. ----- <u>드는</u> -----
10. ~ 12. (생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u>노후 소화설비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u>	<u><삭 제></u>
14. <u>경비원의 근무(휴게)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u>	<u><삭 제></u>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1. -----

현행	개정안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u>소요되는 비용</u>	----- 드는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3. 경비원 및 청소 관련 종사자의 근무(휴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 등에 드는 비용
<신설>	4. 공동주택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공사 등에 드는 비용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한 공사 종류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보조금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 ----- ----- ----- 이하이거나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생략)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u> 한다.	② ----- 호선(互選)-----.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고양시 예산 및 주택업무 담당	1. 주택업무 담당 실장·국장

현행	개정안
<u>당 국장 및 과장</u> 2. ~ 4. (생략) ④ (생략)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u>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u>위원은</u>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6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u> 제7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생략) 1. 2. (생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u>및 부서장</u>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u>개</u>의(開議)----- -----. ⑥ ----- <u>위원에</u> <u>게</u> ----- ----- ----- ----- ----- ----- ----- -----. ⑦ <u>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u> 제7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

현행	개정안
인정하여 <u>심사위원회에</u> 부의하는 사항	----- <u>심사위원회의 회의에</u> 부치는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은 스스로 <u>위원회</u>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 ----- ----- ----- ----- ----- <u>심사위원회</u>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제8조(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 검토반은 공동주택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며 주관부서 <u>담당 팀장</u> 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u>소관 업무별 실무 팀장</u> 을 구성원으로 한다. 이 경우 실무 검토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에 감사부서 실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 ----- ----- <u>업무 담당</u> ----- ----- ----- <u>관련 분야 업무 담당</u>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설계수량, <u>소요 사업비</u>,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를 심사위원회 상정 전 검토 2. (생략) 제9조(사업착수) ① 시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신고 등에 <u>소요되는</u> 기간을 포함한다)하고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0조(정산 및 보조금 교부)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보조금 교부금액 정	1. ----- ----- ----- <u>사업비</u> ----- ----- ----- 2.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착수) ① ----- ----- ----- ----- ----- ----- <u>걸리는</u> -----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정산 및 보조금 교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현행	개정안
산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검토를 받거나 <u>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u> 이에 따른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제11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u>위해</u>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① <u>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u> 1. ~ 9.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u>조정</u> 대상에서 제외한다. 1.·2. (생략) 3. <u>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의</u>	----- ----- <u>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u> ----- ----- -----. 제11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위해(危害)</u>----- ----- ----- -----. 제15조(기능) ① <u>조정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u> 1. ~ 9. (현행과 같음) ② ----- ----- <u>심의·조정</u> ----- -----. 1.·2.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	개정안
<u>결로 결정된 사항</u> 제16조(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생략) 1. 주택업무 담당 <u>국장</u> 2. ~ 5. (생략) ④·⑤ (생략) ⑥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팀장이 된다.</u> 제18조(위원의 제척 등) ①·② (생략) ③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u>위원회</u>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4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상정받은 날부터 <u>60일</u>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제16조(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u>실장·국장</u> 2. ~ 5.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u>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u> <u>다.</u> 제18조(위원의 제척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조정위원회</u> -----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처리기간) ① ----- ----- <u>30일</u> ----- -----

현행	개정안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조정비용) ① (생략)	제32조(조정비용) ① (현행과 같음)
1. 감정·진단·시험등에 <u>소요되는</u> 비용	1. ----- 드는 -----
2. 검사·조사에 <u>소요되는</u> 비용	2. ----- 드는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3천만원	
	1000세대 이상	4천만원	

2. 우수관·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수관·오수관 제외)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1천만원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1천만원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2천만원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 지원	1000세대 미만	2천만원	
	1000세대 이상	3천만원	

개정안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3천만원	
	1000세대 이상	4천만원	

2. 우수관·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수관·오수관 제외)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1천만원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1천만원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2천만원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 지원	1000세대 미만	2천만원	
	1000세대 이상	3천만원	

현행				개정안			
11. 옥외 지상주차장의 증설				11. 옥외 지상주차장의 증설			
시 지원을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시 지원을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3천만원 4천만원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3천만원 4천만원
12.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12.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시 지원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시 지원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20% 지원		1억5천만원(1대당, 1천만원)		총 사업비의 20% 지원		1억5천만원(1대당, 1천만원)	
13. 노후 소화설비 교체 공사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후 시설의 교체·보수 공사			
시 지원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시 지원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3천만원		총 사업비의 50% 지원		4천만원	
14. 경비원의 근무(휴게)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				14.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시 지원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지원대상		최대 지원금액	비 고
총 사업비의 70% 지원		1천5백만원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세대당 700원 이하 및 현장지원수수료 440,000원 이하	다른 보조금과 중복지원 가능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후 시설의 교체·보수 공사				15.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지원			
시 지원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시 지원을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지원항목
총 사업비의 50% 지원		4천만원		총 사업비의 50% 지원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1000세대 미만	1천5백만원
						2000세대 미만	2천만원
						3000세대 미만	2천5백만원
							공용부 보수·교체 공사 또는 공동체 활성화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16.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16. 경비원 및 청소 관련 종사자의 근무(휴게)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			
지원대상		최대 지원금액	비 고	시 지원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세대당 700원 이하 및 현장지원수수료 440,000원 이하	다른 보조금과 중복지원 가능	총 사업비의 70% 지원		1천5백만원	

현행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	주소			신청인 (신청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 □여)	
	성명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연락처
피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신청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 □여)	
	성명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연락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주소			
분쟁발생사유				조정 받으려는 사항			
당사자간 협의 진행사항				분쟁 발생 사유			
첨부서류				당사자 간 협의 진행사항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장 귀하			
				※ 작성 시 참고사항: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는 선택하여 기재 가능하나, 피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항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공고 제2026-1647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의안건 검토의 내실화와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적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 나. 당연직 위원에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담당 과장을 추가함(안 제2조제3항).

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7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토지정보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8075-3092

- 팩 스: 031-8075-493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실·국장”을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정기회의”를 “위원회의 정기회의”로 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의 제목 “의사”를 “의결”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간사 및 서기”를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를 “처리한다”로 한다.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각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기관,”를 “기관”으로, “출석시켜”를 “출석하게 하여”로, “청취하거나”를 “듣거나”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

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중 “시”를 “고양시”로,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공개하여서”를 “공개해서”로,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14조 중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를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토지정보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토지정보과장 안 수 민
	팀 장 성 명	토지관리팀장 최 기 형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김 영 태 (031-8075-309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u>실·국장</u>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④ <u>당연직</u>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실장·국장</u> 및 과장----- ----- ----- ----- ----- <u>않아야</u> --. 1. ~ 3. (현행과 같음) ④ <u>위촉직</u> ----- ----- ----- -----.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생략)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소집) <신 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6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각 소관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직원 으로 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

제5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 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

-----.

제6조(의결) -----
----- 개 의(開議)-----
-----.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각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 위원회-----

----- 처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
-- 인정하는 -----
---- 기관 -----
---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
-----.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

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독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성·보존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u>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u> 6. <u>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u> 7. <u>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② <u>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위원의 해촉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③ <u>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u>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 등에 참여할 수 없다.</u> 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u>위원회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한다.</u> <u><삭 제></u>
--	--

<u>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 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3. <u>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u> 4. <u>위원 또는 위원에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② <u>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u> ③ <u>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u> 제12조(수당과 여비) <u>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제13조(회의내용의 비공개) <u>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제12조(수당과 여비) <u>고양시</u> ----- ----- <u>위원에게는</u> ---- ----- ----- ----- -----. 제13조(회의내용의 비공개) ----- -----
--	--

의 허가없이 <u>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4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u>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u>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u>공개해서는 안 된다.</u> 제14조(시행세칙) ----- -- <u>외에 위원회의 운영에</u> ----- ----- -----.
---	---